

# 외국의 침입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

박현호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외국의 침입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

## 왜 침입범죄 예방이 중요한가?

범죄 중에서도 침입절도(burglary)는 주택·건조물·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것으로, 2014년도 범죄백서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의 침입절도 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도의 지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2013년은 163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절도 범죄 중 침입에 의한 절도는 약 32%로, 다른 유형의 절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도구 등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 전문 범죄꾼이건 상황적으로 우연히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이건, 주택이나 건축물로 침입하는 행위는 단지 절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빙집 텔이를 하려고 건축물에 침입했다가 여러 상황(빙집인 줄 알았는데 성인 남성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방어를 해 오는 경우나 여성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등)을 접함에 따라 공격성이 촉발되거나 연동되는 범죄심리 변화로 인하여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도에 강간이나 성추행 사건 1만 9,649 건 중 20%가 주거침입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는 상관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게다가 범죄학적으로 볼 때 침입범죄는 공식 범죄통계만으로는 실제 발생하는 피해의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침입범죄 피해자의 신고 비율은 3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여러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다. 이렇듯 신고하지 않은 범죄건수를 암수(dark figure)라고 하며, 이러한 범죄암수를 고려할 때 2012년, 2013년 전국적으로 입은 침입범죄 피해는 30만 건에 가깝다.

**침입절도의 발생 건수(2006~2013)**

연도	공식 건수	암수 추산 건수	지수
2006	65,255	215,363	100
2007	72,911	240,630	112
2008	73,603	242,914	113
2009	81,036	267,446	124
2010	80,083	264,300	123
2011	77,335	255,231	118
2012	91,093	300,637	170
2013	87,069	287,356	163

자료: 2014 범죄백서

2012년 12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 주민 1,808명을 대상으로 범죄불안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두려운 범죄는 단연 침입범죄(25.7%)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국민이 가장 빈번히 당하고 가장 두려워 하는 범죄가 바로 침입범죄인 것이다.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봉천동 주택 세자매 살상사건이나 서진환의 주택가 주부 강간살인사건 등 많은 이목을 집중시킨 강력사건들도 침입범죄로 벌어졌다. 그리고 범인들은 범행 당시 도구도 없이 아주 쉽게 침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국제표준인 ISO 31000을 근거로 이 침입범죄를 사회의 한 위험(risk)으로 규정할 때 발생 빈도(확률)와 그로 인한 여파(경제적 영향, 심리적 영향)가 모두 최고 수준인 최고 위험도(highest risk)를 나타낸다. 이러한 범죄위험(crime risk)을 그 위험의 수준과 요인, 특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예

\* 박현호, 「방범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 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 학회지』 제36호, 2013, pp.255~292.

측·분석·측정(평가)하고 이를 비용·효과적인 자원(돈·인력 등) 투입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경감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ISO 31000에서는 소위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최고 수준의 위험에 대하여 적절히 평가하고 그 수준에 맞게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투입하여 빈도와 여파를 경감하여 왔는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자원 투입은 거의 없고 방향도 많이 틀렸다. 물론 그러한 침입범죄를 문제시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접근방법이 전혀 문제를 경감시키지 못하였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합하여 방법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공공장소 방범카메라는 2002년에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5대를 설치한 후 최근에 14만 대까지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경찰은 주택가에서 침입범죄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응해서 가스배관에 오일이나 특수 형광물질을 바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침입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파트 셉테드(CPTED) 인증이 이루어지고, 지자체와 경찰은 물론 법무부까지 나서서 각종 셉테드 사업을 수백 개나 쏟아내고 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CCTV이겠지만 그 외에도 안전비상밸·반사경·가시적 표지판 설치, 담장 및 도로 도색, 벽화, LED 조명 개선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과 많은 행정력 등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침입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단순하다. 건축물의 침입구인 창호에 대한 바른 셉테드는 타깃 강화(Target Hardening)인데, 이러한 타깃 하드닝 기법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현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주거평온권이 위협받는, 정부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침입범죄의 핵심적 위험 요인(factor)은 ‘문이나 창문 등 건물 개구부를 통한 접근이 너무 쉽다’는 점이다. 창살과 현관문이 잠겨 있더라도 맨발 또는 멘손으로 조금만 충격을 주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나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만으로도 불과 몇 초 만에 침입할 만한 크기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CCTV로는 침입 자체를 직접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창호의 재질 및 구조 즉, 하드웨어 자체가 이런 일반적인 공격을 받아도 수초 만에 쉽게 침입공간이 생겨나지 않고 일정 시간을 견

디며 방어하는 공격저항(burglary attack resistance) 성능을 갖추는 것이 적절한 대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언론 등을 통해 이 문제와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하게 다루어야 할 이 최우선 순위 사안은 공공장소가 아닌 개별 가구의 문제라는 이유로 셉테드 사업에서 누락시키고 방치하고 있다.

정말로 눈에만 보이는 전시행정 위주의 셉테드 사업만 할 것인가? 정작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곳에는 예산투입을 안 할 것인가? 이런 침입범죄에 대해 선진 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 외국의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제도 및 표준화

해외의 많은 선진국들은 침입범죄 방지를 위한 창호(doors and windows), 유리, 잠금장치 등에 대한 침입저항 성능 표준과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된 국제표준(ISO 16936-1&2 강제침입 방지 판유리, 유럽표준 EN 1627·1628 창문, 출입문, 셔터, 침입 강도와 저항력 측정 등급 및 테스트 등)도 있다. 영국·네덜란드·독일 등 유럽연합국들은 이러한 유럽표준을 근거로 제정한 국가표준(영국은 BS, 네덜란드 NEN)과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개발하여 제정한 단체표준(영국 BRE의 LPS 1175가 대표적)을 활용하여 창호 등의 침입저항 성능 시험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침입범죄 공격행위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택 및 상업·업무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먼저 영국은 1998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였다. 이미 20년 가까운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다. 대표적인 침입저항 성능 창호제품 인증으로는 LPCB인증과 SBD(Secured by Design)인증이 있다.

LPCB인증이란 BRE Global 산하 손실방지인증위원회(LPCB)에서 정부·경찰·기업과 함께 침입저항 성능등급 체계를 개발하여 도출된 단체표준인 LPS 1175에 의해 8등급으로 침입저항 수준을 구분하고 시험 원이 등급별(Category A~G) 도구와 장비를 사용한 시험을 통하여 경보기, 문, 창문, 셔터, 잠금장치 등 하드웨어에 대한 침입저항 시간(1~20 분)을 측정하여 그 성능을 인증하는 것이다. 시험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BRE가 자체 시험소에서 시행한다. 시험원이 맨몸이나 도구, 장비를 이용하여 타격·제거·절단하는 것에 저항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SBD인증은 영국 전국경찰지휘관협회에서 내무부(Home Office)와 교통지자체부(DTLR)의 협의하에 발기된 공식적인 방범디자인 인증 제도이다. SBD 성능인증은 창호 제조사에서 이를 신청하면 정부 공인시험소에서 EN 162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등의 표준화된 시험기준에 의해 공인시험기관이 샘플제품에 대한 성능(performance) 시험을 하는데,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네덜란드에도 제품 성능인증이 있다. 문·창호 등의 침입범죄 방범 성능인증인 SKG(도어셋, 창문, 창틀 품질시험센터) KOMO인증과 SKH(목재제품 품질시험센터) KOMO인증이다. 이들은 목재, PVC, 철재의 창, 쇄시, 창살, 유리, 도어, 셔터 등의 방범성능을 테스트한다. 여기서 KOMO인증(마크)이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유사한 네덜란드 국가 통합 품질인증을 말한다.

일본은 2002년 11월 25일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경찰청과 유리·필름, 셔터·도어·새시, 자물쇠 등 9개의 건물부품 민간단체가 ‘방범성능이 높은 건물부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관민합동회의’를 설치하고, 건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한 각 건물부품의 기준 등에 대해서 검토를 거듭한 후 방범성능 시험에 관한 총칙으로 규칙과 세칙을 제정하였다. 이후 방범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침입공격에 뚫리지 않고 5분 이상을 버티는 저항 성능이 있다고 평가된 건물부품 17종류 3,227품목(2013년 5월 기준)을 공표하고\*, 방범성능이 높은 건물부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통 호칭(방범건물 부품)’과 같은 ‘공통 인증(CP마크)’을 제정키로 하였다. 2005년 9월에는 국토교통성에서 운영하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평가지표에서 방범에 관한 사항으로 ‘개구부의 침입 방지대책’을 성능표시 사항에 추가하기도 하였다.

호주에서는 2003년 3월에 뉴사우스웨일스경찰청, 빅토리아 경찰청, 웨스턴호주경찰청, 퀸즐랜드경찰청, 뉴사우스웨일스주택국, 호주표준원, 모나시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와 호주상공회의소, 그리고 건축부품 관련 민간전문단체들(알루미늄협회, 창문협회, 건축사협회, 주택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www.mlit.go.jp](http://www.mlit.go.jp)) 참고

산업협회, 호주보험협회, 랙스미스협회, 방범창협회 등이 ‘방범문 및 방범창살’ 전문위원회(CS-023)를 구성하여 건축물, 특히 주택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문·방범창살 내부 재질과 관련 하드웨어의 디자인 및 성능과 설치를 위한 요구사항 기준을 개발하고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제정된 국가표준이 ‘AS 5039 Security screen doors and security window grilles(방범문·방범창살 내부 재질과 관련 하드웨어의 디자인 및 성능)’, ‘AS 5040 성능인증 제품의 설치에 관한 시방’이며, 보다 상향된 침입저항 등급과 수준을 다루는 표준인 ‘AS 3555.1 건물부품-침입 저항시험 및 등급’ 등이 추가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가표준에 따라 다양한 공인시험기관의 엄격한 성능 테스트를 통해 인증된 제품이 판매·설치되고 있다.\*

#### 영국(SBD), 네덜란드(KOMO), 일본(CP)의 방범인증 마크 및 시험 장면



자료: 박현호, 「방범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 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6호, 2013, pp.255-292에서 그림 재인용

위의 외국 사례들이 가진 공통점은 우선 셉테드 사업을 통해서 정부나 자체가 침입범죄 피해를 당한 주택이나 취약한 서민·세입자 주택에는 최우선적으로 무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타깃 하드닝을 위한 방범인증제품을 설치해 왔다는 점이다. 침입범죄를 인적 재난 수준으로 간주하고 위험관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부가 피해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구부의 침입저항 성능 표준이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네덜란드는 1999년 주택법에서 최소 3분 이상, 영국의 경우 2015년 건축법 개정으로 최소 1분 이상 방어해야 한다.

\* [www.saiglobal.com](http://www.saiglobal.com) 참고

셋째, 건물부품 등 하드웨어의 방범성능 및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시방이나 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주택·아파트·상업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방범성능 인증에 중요한 평가기준에 창문·도어·잠금장치 등 하드웨어의 인증제품 사용이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건물과 건물부품(창호) 간 방범성능에 연계성이 있는 것이다.

##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발전 방향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준들이 없지는 않다.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표준들을 참고하여 이미 몇몇 국가표준 KS(기계에 의한 정하중 및 동하중 침입공격 저항 성능표준)와 단체표준(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SPS-SDT-000 : 2044 방범문, SPS-SDT-0001-2056 방범창살, SPS-SDT-0005 창호용 잠금장치 등 시험원에 의한 침입공격 저항 성능 표준), 그리고 학회·협회의 각종 자율인증표준(문, 창, 창살, 망창, 잠금장치)들이 제정되어 방범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까지 출시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방범창살과 방범용 망창(mesh, 방범기능을 하는 방충망) 인증제품이 판매를 시작하였고, 잠금장치 등에 대해서는 인증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선진국과 유사한 체계에 의하여 등급화된 침입저항 성능 시험 및 인증 시스템을 갖추었으므로 성능 테스트를 마치고 인증된 방범문과 방범창(살) 등이 조속히 보급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현재 걸림돌은 개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를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과 근거는 셉테드 사업을 주관하고 공동으로 협력하는 양 주체인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면 된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두 축이다.

먼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근 1~2년 동안 1회 이상 침입범죄 피해를 입은 가구가 설치의 최우선 순위일 것이다. 침입범죄는 성격상 반복적 피해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택의

\* www.sdtkorea.or.kr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함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200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2006.html) 참고

주변에 피해주택과 유사한 건축환경을 가진 주택이나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큰 주택들이 차순위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주인이나 세입자에 관계없이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해주되 소득 수준에 맞춰 차등 지원해 주면 된다. 즉 극빈층의 경우 무료로 설치해 주고, 중산층은 일정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는 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다. 실제 설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화재발생 시 건물 안에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된 제품이 일정 비율로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혹자는 감지기와 경보장치를 부착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감지기와 경보장치는 오작동이 빈번하고 그때마다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특히 거주자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감지기와 경보장치를 해제하고 있어야 한다. 사용하는데 한계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창호 하드웨어 자체가 공격 저항 성능을 가져야 하고, 감지기나 경보기는 부차적인 옵션으로 보아야 한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건축법」을 개정하여 창호의 침입저항 성능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면 된다. LH공사를 통해 건설되는 공영주택이나 공공건축물들에 우선 적용한 후 이를 민간 건축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어떠한 방범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 뚫리고 범죄총량 불변법칙에 의해 결국 피해는 그만큼 발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범죄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문 범죄자(재범자)보다 범죄 경험이 없는 초범자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형사정책연구원 등이 교도소 재소자(209명)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계획적으로 도구를 준비해서 건물에 침입하려는 범죄자들조차 침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범죄를 단념하거나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방범인증 시설이 있을 경우 아예 침입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범죄성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침입이 너무 쉬워 보여서 충동적으로 저지르던 범죄 행위들을 막아줌으로써 엉겁결에 전과자 신세가 되는 일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침입범죄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전술한 침입범죄의 빈도를 실효적으로 경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연구총서 08-00, 2008.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에 머물러 있거나 외출할 때 가지는 침입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편 어느 장소에서 범죄가 어려워지면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범죄전이현상, 소위 풍선효과는 기우에 불과하다. 국내외의 연구사례를 보면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고 통설이다. 나아가 시계열적 연구들은 방범성능인증 창호를 설치함으로써 달성한 범죄경감효과는 시간이 흘러도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침입 방어성능 인증제품의 보급이 하루빨리 확산되어 너무 쉽게 침입범죄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대폭 줄어들고, 집에 있거나 외출을 할 때 더욱 마음 편하게 주거의 평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참고문헌

- 1 박현호, 「방범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 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 학회지』 제36호, 2013.
- 2 박현호, 『CPTED와 범죄과학』, 박영사, 2014.
-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연구총서 08-00, 2008.